

【 10 】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5. 19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,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른
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“사무직원”을 “업무보조원”으로 명칭 변경 (안 제5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“사무직원”을 각각 “업무보조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<u>사무직원</u>)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	제5조 (<u>업무보조원</u>) -----
원외에 필요한 <u>사무직원</u> 을 둘 수 있다.	----- <u>업무보조원</u> -----